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7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- 특수경력직공무원(별정직공무원)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
 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 가능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('08.12) 사항을 반영

2.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 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-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 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-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 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-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 -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통보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공무원중 읍·면·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”을 “지방별정직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”을 “법 제2조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전보, 휴직, 면직”을 “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31조 각호의1”을 “법 제31조 각호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단위기관에서 전보”를 “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

위로 전보”로 “규정을 따른다”를 “규정에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법 제31조 각호의 1”를 “법 제31조 각호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

-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-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

제11조의3제2항중 “제11조제1호”를 “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요
<u>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</u> 제2조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법 제 2조 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 면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'별정직공무원'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② (생략)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 제3조(임용권자) ①시장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, 전보, 휴직,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 (이하 '임용권'이라 한다)을 가진다.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 제4조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②~③ (생략)	<u>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</u> 제2조(적용범위) ①----- 지방별정직 공무원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법 제2조제3항제2호-----. 제3조(임용권자) ①-----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-----.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 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②~③ (현행과 같음)	• 제명 띄어 쓰기 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읍면동장을 제외 •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 신 설 >	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 25조의 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• 외국인 채용가능
제6조(신규임용 연령)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	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.	•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
제7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 조제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.	제7조(전보)----- -----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----- ----- 규정에 준용한다.	
제9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 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	제9조(당연퇴직) ----- 법 제 31조 각호----- -----.	
제11조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(개정 1999.01.18) 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(한시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	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 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2항제 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 63조제 2항제 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 41조제 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	•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가능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1조의2(휴직기간)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 (신설 1999.01.18) 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 제12조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항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	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 제11조의2 <삭제> 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1조----- ----- ----- -----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 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	•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• 별정직근무성적평정 근거 마련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3조(징계)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	제13조(징계) ----- -----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 -----.	